

##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

건설부는 해외건설에 대한 각종규제를 완화하여 국내건설업체들의 자율적인 해외진출을 유도한다는 의도아래, 해외건설등록제 도입, 도급한도액제도 폐지, 해외건설참여대상확대등의 내용을 골자로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을 지난 7월 1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원안대로 수정없이 의결,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 대로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무회의의결을 거친 해외건설촉진법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건설업면허제를 수시등록제로 바꾸고 등록대상에 오염방지사설업이 추가된다.

해외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건설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 현행 도급허가제가 해외공사 수행계획신고제로 완화되고, 업체별 도급한도액제도를 폐지하여 민간업체 스스로 판단해 자기 능력에 맞는 공사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 현행 종합해외건설업종내용에 '엔지니어링활동'을 추가하여 능력을 갖춘 대형건설업체를 종합건설업(제네콘)화할 계획이다.

地方公企業을 해외건설등록없이도 해외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켰다.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도 해외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해외공사 수주활동계획신고의무조항이 폐지된다.

해외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준공후 하자보수기간내에 시설물에 중대한 손실과 파괴가 발생한 경우, 벌금을 현행 500만원이하에서 3천만원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하였으며, 영업정지처분이 강화되어 해외공사의 부실시공, 국위손상, 계약불이행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이상 2년이내의 범위안에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우수해외건설업자 지정제도가 도입되어 우수업자에게는 해외건설진흥기금사업을 우선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해외건설진흥기금은 연구개발, 시장개척을 위한 사전조사비 지원등에 쓰이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 재무부 유권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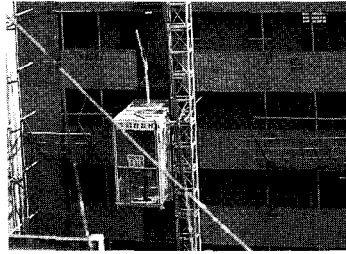
## 주공종면허취득 3년 이상 사업해야

재무부는 건설협회가 「89년 건설업 신규면허 발급시 도목 또는 건축단일면허를 취득한 건설업체가 92년도에 土建면허로 변경 취득했을 때 입찰보증금면제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에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이 면제되는 것은 복합공사의 경우 주공종에 필요한 해당면허 등을 받은 자로서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3년 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건설협회가 「종전에 개인(他법인 포함)이 영위하던 건설업면허를 법인이 양도받아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개인(他법인 포함)과 법인의 건설업 영위기간을 합해 3년 이상이 된 경우의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여부」를 물은 질의에 대해서는 재무부는 「건설업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인의 면허를 양수해 당해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양도법인의 당해면허 영위기간도 計上해 同유의서 同조항의 입찰보증금의 면제대상기준인 3년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이지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면허를 다른 법인이 양수했을 경우에 개인이 당해면허를 영위한 기간을 計上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건설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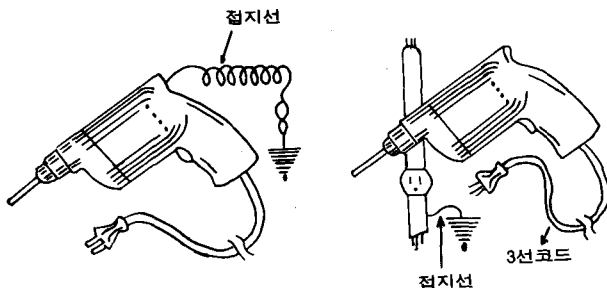
1. 특수건설업면허제도 폐지  
특수건설업면허(철강재, 준설, 포장, 조경)를 폐지하고 전문건설업으로 조정
2. 건설업면허 주기 단축  
건설업면허를 3년마다 1회 실시하던 것을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함
3. 건설업면허갱신 주기 연장  
건설업면허는 매 3년마다 갱신 받아야 하던 것을 매 5년마다 갱신
4. 도급한도액제도 개선  
PQ에 의하여 도급계약한 경우에는 도급한도액 적용에서 제외
5. 소규모건축공사의 시공자 규제 강화  
연면적 85㎡이상 661㎡미만 건물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가 시공



6.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  
건설업자에게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7. 건설업자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보수의무기간을 설정
8. 건설공사 참가자 명판설치 의무화  
건설공사의 준공시에 당해 공사에 참여한 설계자, 시공자(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감리

- 자, 하자보수의무기간 등을 기재한 명판 설치 의무화
9. 부실시공 업체 제재강화  
건설업자가 고의·과실로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경우 건설업면허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강화
  10. 불법하도급업체제재 강화  
일괄하도급한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건설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11. 건설공사 현장배치 기술인력 자격완화  
단순기능의 전문공사인 경우는 건설기술자 대신 해당분야 기능사자격 취득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12. 상호 표시제한  
다른업종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호를 표시할 수 없도록 제한함.

## 파워드릴 작업의 전격방지



파워드릴(Power Drill)의 작업시 전격에 의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즉 전격에 의한 충격으로 드릴을 떨어뜨려 신체에 부딪힌다든가 날카로운 날에 찔려 상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파워드릴 작업은 전격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런 면에서 이중절연과 접지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파워드릴의 구입시에는 비전도성 물질(플라스틱 등)의 케이스로 된 것을 고르고 사용시에는 삼선코드를 써서 땅에 접지하도록 한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개정령

건설부는 지난 7월8일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을 개정, 주택상환사채발행의 공고에 관한 사항 및 주택입주자에정자가 주택을 시공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한 사항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민영주택의 공급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의 근거를 신설하며,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등록시기를 자율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다.

건설부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등록을 종전에는 연1회 일정기간을 정하여 등록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시기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율화하고, 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자본금 및 기술능력의 적합여부 등 기술적인 사항을 등록주택사업자협회에서 확인하도록 하여 행정기관의 업무담당을 경감시키기로 했으며 [제8조] 민영주택의 공급에 있어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예금은 한국주택은행에서 취급하도록 하되, 예금의 이율과 사용용도는 건설부장관과 재무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했다. [제14조의 2]

또 사업주체와 시공보증회사가 모두 파산 등으로 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10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된 대표자들이 공사를 계속 시공할 자를 정하여 공사를 완료하도록 했으며 [제22조의 2], 공동주택은 노후·불량주택에 한하여 이를 재건축할 수 있는 바, 그 노후·불량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기관의 범위에 전면책임감리전문회사·한국건설안전기술원 및 대학교부설연구기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제32조의 2]

그리고 주택상환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접수일의 7일전까지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공고안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정했다. [제15조의 2]

## 주요 개정내용

**제8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를 「법 제4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등록주택사업자협회(이하 “등록주택사업자협회”라 한다)에」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등록주택사업자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등록기준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

한다. 이하 같다.)

3. 기술자격취득자의 이중 취업여부

**제8조 제6항 본문중** 「등록사항변경신청서」를 「등록사항변경신고서」로 하고, 동항 단서중 「신청」을 「신고」로 하며, 동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8항중 「5천원」을 「1만원」으로 하며,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도지사는 등록업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업자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즉시 건설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을 말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⑨영 제9조의 2 제4항 단서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본금의 증액
2. 기술자격취득자가 변경된 경우
3. 사무실 면적이 증가된 경우

**제14조의 2(입주자저축)**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종류는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은 한국주택은행이 이를 취급한다. 다만, 한국주택은행이 없는 지역에서는 한국주택은행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이를 취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의 취급기관은 저축 및 예금의 실적 등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 2(주택상환사채모집 공고)** ①영 제2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이하 “사채”라 한다)의 모집공고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채의 명칭
2. 상환대상주택의 건설위치
3. 상환대상주택의 세대당 공급면적, 세대수 및 세대별 사채금액
4. 사채신청자격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5. 사채이율·이자지급방법·사채대금납부방법 등 발행조건에 관한 사항
6. 상환예정일
7. 사채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8. 영 제27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매입자에 대한 규제 내용

②사채의 신청가격 및 순위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영주택의 입주자격 및 순위를 준용한다.

③사채발행자는 사채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채모집 7일전까지 일간신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모집안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 2(입주예정자의 사용검사)** ①영 제3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을 보증한

자가 파산 등으로 주택을 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시장 등은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고, 건축공사현장에 1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입주예정자는 10인 이내의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당해 공사를 계속 시공할 자를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33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의 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42조 제8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진단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건축사협회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면책임감리 전문회사
4. 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원
5.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의 부설연구기관(연구기관이 상설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32조의 2 제2항 본문중** 「영 제42조 제5항」을 「영 제42조 제8항」으로,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해위험구역으로서 재건축이 필요한 사유(영 제4조의 2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5. 도시미관·토지이용도·난방방식·구조적결함 또는 부실시공 등의 재건축이 불가피한 사유(영 제4조의 2 제5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건설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